

「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16조
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,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, 포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줌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